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11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피 고 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웅

3. F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1.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8. 17. 접수 제24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 B, C이 피고 D을 상대로 주문 제2, 3항 기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밀양시 G 답 3058.7㎡를 공유했던 사람들, 피고 E은 H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 F과 ① 원고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밀양시 G 답 3058.7㎡를 환매특약을 붙여 125,000,000원에 매도하되, ② 영농조합법인의 위 매매대금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E, F이 원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① 원고들과 피고 E, F은 2017. 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7년 제87호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를, ② 원고와 피고 E, F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7년 제88호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환매 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1)

(제1조) 매매대금은 일금 일억이천오백만(125,000,000)원으로 하며, 2017년 1월 16일까지 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전항의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환수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인한다.

2017년 1월 16일

매도인: A (인)

B (인)

C (인)

매수인: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E (인)

차용증(갑 제2호증의2)

1. 원금: 금 일억이천오백만 원(125,000,000원)

2. 변제기일 2018년 3월 30일

3. 이자: 월 30만 원

4.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15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7년 1월 16일

채 무 자: E (인)

연대보증인: F (인)

채권자 A 귀하

다. 영농조합법인은 2017. 1. 23.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라 밀양시 G 답 3058.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압류등기 등이 마쳐졌다.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근저당권설정	2017년 3월 3일	2017년 3월 3일 설정 계약	채무자 H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J조합법인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년 1월 2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K	채권자 L	취하 말소
압류	2019년 9월 11일	압류	권리자 밀양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년 11월 2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M	채권자 L	

라. 피고 E은 2017. 8. 1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17. 접수 제2492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E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이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E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지급의 시기(始期)인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은 ‘원고 A이 피고 E에게 차용금 125,0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차용금채권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현금이 당사자에게 교부될 필요는 없는 점, ② 피고 E은 영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차용금이 피고 E에게 실제로 교부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B, C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 B, C은 ‘원고들은 피고 E에게, 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밀양시 G 답 3058.7㎡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채권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는 “채권자 A 귀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 B, C이 채권자임을 표시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 C이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보건대, ① 이 사건 환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E의 기명 옆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이 표시되었으며, 피고 E의 기명 옆에 날인된 인장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인장인 점, ②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 E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환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피고 E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
적극재산	1	밀양시 N 답 78㎡	7,355,400원
		합 계	7,355,400원
소극재산	1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	125,000,000원
		합 계	125,000,000원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이 딸인 피고 D에게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처분행위를 알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1) 피고 E은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피고 D은 부모의 병치료와 노후준비를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E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 D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E이 선의였다는 항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E의 의사로 작성되었음이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D이 선의였다는 항변에 관해 보건대, ① 피고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점, ② 피고 D은 피고 E의 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랑

별지

목 록

1. 밀양시 O 전 581㎡
2. 밀양시 P 전 261㎡
3. 밀양시 Q 전 295㎡
4. 밀양시 R 답 1021㎡
5. 밀양시 S 답 1821.2㎡. 끝.

